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14
----------	-------

발의연월일 : 2025. 12. 9.

발 의 자 : 김승원 · 한병도 · 민병덕
임호선 · 이학영 · 강준현
정진욱 · 김남근 · 김준혁
최혁진 · 복기왕 · 박수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챗봇, 로봇어드바이저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금융상품 판매상담과 계약체결이 급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담 또는 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이 인공지능인지를 파악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이유도 명확히 알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인공지능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인공지능을 이용한 판매 관련 준수사항)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이하 “인공지능”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해당 권유가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고 계약 체결의 권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제4항 중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밝히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밝히지 아니한 자
4.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의 권유가 인공지능에 기반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2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고 계약 체결
의 권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1조의3(인공지능을 이용한 판매 관련 준수사항)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이하 “인공지능”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해당 권유가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u> <u>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고 계약 체결의 권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u>

제69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밝히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밝히지 아니한 자

4.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의 권유가 인공지능

<u><신 설></u> ⑤ (생 략)	<u>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u> <u>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아니</u> <u>한 자</u> 5. 제2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u>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고 계</u> <u>약 체결의 권유가 이루어질</u> <u>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u> ⑤ (현행과 같음)
--	--